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16

발의연월일: 2020. 11. 11.

발 의 자: 강준현·홍성국·양정숙

이개호 · 김회재 · 허 영

김상희 · 최혜영 · 박상혁

박영순 · 남인순 · 김수흥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2021. 1. 1.부터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공사 완료 공고된 지역은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어 해당지역에서 국가가 수행하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

이와 관련하여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국가계획인 기본계획·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국가 행정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주요기능이 입지한 지역에 대한 국가의 계획·관리 권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정지역이 해제되더라도 도시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의무를 부여하여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한 구역에 대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설청장에게 계획·관리권한을 부여함 (안 제15조의2 신설).
- 나. 제15조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 항을 준용함(안 제6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성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한 구역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지역
 - 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 령기록관이 입지한 지역
 -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조 성된 국립수목원이 입지한 지역
 - 4.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입지한 지역
 - 5. 「국회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회세종의사당이 입지하는 지역
 - 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지역

- 7. 기타 국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②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 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④ 특별관리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특별 관리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⑥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 내 개발계획 및 주요시설간 연계강화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계획에 따라 주요 기반시설 등을 직접 관리하거나 관리청의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 안의 주요 기반시설 등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제6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5조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 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
	합도시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한 구역
	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
	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특
	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
	<u>다.</u>
	1.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
	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u>지역</u>
	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
	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설
	치된 대통령기록관이 입지한
	<u>지역</u> -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국립수목원이
	입지한 지역
	4. 「도서관법」 제18조에 따
	라 설치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입지한 지역
	5. 「국회법」에 따라 설치되

- 는 국회세종의사당이 입지하 는 지역
- 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 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 도시 지역
- 7. 기타 국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②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 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도 불구하고 예정지역에서 해 제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④ 특별관리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u>⑤</u>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생 략)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생략)

<신 설>

2. ~ 11. (생 략)

③ (생략)

례) ① ~ ⑤ (생 략)

<신 설>

특별관리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 내 개발계획 및 주요시설간 연 계강화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 립하여야 하며, 관리계획에 따 라 주요 기반시설 등을 직접 관리하거나 관리청의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1의2.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 된 특별관리구역 안의 주요 기반시설 등의 관리에 소요 되는 비용
- 2. ~ 11. (현행 제11호와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제60조(도시・군계획에 관한 특 제60조(도시・군계획에 관한 특 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제15조에 따라 예정지역에 서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을 준
	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
	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u>⑥</u>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